

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87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11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나. 제출일 : 2024년 8월 12일
다. 회부일 : 2024년 8월 14일
라. 상정일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24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수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. 12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1조

- 추진 필요성

- 시립수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진로직업·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.
-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44
- 시설규모 : 부지 41,328㎡ / 건물 6,381㎡
- 주요시설 : 수영장, 청소년극장, 대체육관, 특성화사업공간, 디지털체험공간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 ~ 2027.12.31.)
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- 소요예산 : 3,990백만원('24년)
 - 산출근거 : 인건비 1,411백만원, 운영비 683백만원, 사업비 1,786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110백만원
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1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시립수서청소년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(2025.1.~2027.12.)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.

〈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시립수서청소년센터 관리 운영
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44
- 시설규모 : 부지면적 41,328㎡, 연면적 6,381㎡ (층수) 지상3층, 지하2층, 1개동
- 주요시설 : 수영장, 헬스실, 청소년극장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탁사무 내용
 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 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 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 -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. ~ 2027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753백만원('24년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

- 시립수서청소년센터는 모션 인식 스포츠 기기를 활용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‘스마트스포츠스페이스’,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습지원, 체험활동 및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‘꿈나래’ 등 132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, 청소년 이용률은 80%를 웃도는 수치로, 「청소년수련시설 관리·운영지침」 상 최소 이용률인 60%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.

〈 시립수서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〉

구분	프로그램 수	이용인원	청소년	청소년이용률
2021년	146개	196,147명	161,401명	82.3%
2022년	161개	333,757명	275,038명	82.4%
2023년	166개	455,171명	379,442명	83.4%
2024년(~7월)	132개	290,191명	246,592명	84.9%

〈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·운영 지침 〉

다. 이용자 관리

□ 업무내용

2)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

-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%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·관리하여야 함

- 다만, 최근 3년간 청소년정책과에서 실시한 지도·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,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, 직원 재택근무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음.

< 최근 3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지도·점검 지적사항 >

- 운영위원회 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
- 직원 재택근무 관련 서류 관리 미흡
- 피난안내도 관리 미흡
- 비품(노트북 등) 수불대장 부재
- 강사(수영)에 대한 별도 평가 없이,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 시행
- 강사료 지급 부적정
- 업무추진비 집행 지출결의서 기한 미준수 등
-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
- 매입세액공제액 회계처리 미흡
- 수익계약 구비서류 미흡
- 인사위원회 수당 원천징수 미시행

- 같은 시설을 15년이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, 인사 회계 물품관리 등 시설 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에 청소년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.

<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수탁현황 >

- 1994.07.01. ~ 1997.06.30. : 신 규 / (사)상희원
- 1997.07.01. ~ 2000.10.31. : 재계약 / (사)상희원 / 재계약
- 2000.11.01. ~ 2003.10.31. : 재위탁 / (사)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
- 2003.11.01. ~ 2006.10.31. : 재계약 / (사)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
- 2006.11.01. ~ 2009.11.30. : 재위탁 / (사)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
- 2009.12.01. ~ 2012.12.31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세상
- 2013.01.01. ~ 2014.12.31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세상
- 2015.01.01. ~ 2017.12.31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세상
- 2018.01.01. ~ 2019.12.31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세상
- 2020.01.01. ~ 2022.12.31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세상
- 2023.01.01. ~ 2024.12.31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세상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수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. 12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
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○ 추진의 필요성

- 시립수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진로직업·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
-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44
- 개관일자 : 1994. 7. 21.
- 시설규모 : 부지 41,328㎡ / 건물 6,381㎡
- 주요시설 : 수영장, 청소년극장, 대체육관, 특성화사업공간,
디지털체험공간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5.1.1 ~ 2027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,990백만원('24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1,411백만원, 운영비 683백만원, 사업비 1,786백만원,
사업외지출 및 기타 11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3.18., 2009.7.30., 2014.5.14., 2019.9.26.>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7.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(☎02-2133-4121)